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·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공항정책관, 공항운영과장을 직무특수성 및 내부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의 사유로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2024-1828호

##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중 “감사관, 공항정책관”을 “감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항운영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”를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」 제56조에 따라 <u>감사관, 공항정책관</u>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p> <p>②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<u>공항운영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</u>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사관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